

인간 생명을 전달할 임무에 관한 교회 가르침: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 해설

박정우 후고 신부¹⁾

회칙의 배경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은 인공 피임 등 인위적인 산아제한을 금지하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1968년 7월 25일에 반포되었다. 이 회칙은 반포 당시 교회 안팎으로 상당히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교황의 회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대를 받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원전 19세기 이집트 파피루스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임을 시도해온 역사는 오래되었다. 하지만 공적으로 사회에서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토마스 맬더스(1766~1834)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식량대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통제가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산업 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임금 노동 경제가 확산되면서 가장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은 이제 경제적인 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식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더 안전한 피임 방법과 도구가 생겨났고, 부의 확대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성(sexuality)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생식의 수단으로서의 성은 이차적인 것이 되고 남녀 간의 상호관계와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 된 것이다.

1914년 간호사였던 마가렛 생어(1879-1966)는 피임법을 보급하는 운동을 펼치며 '산아제한(birth control)'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1921년에는 미국 산아제한연맹(American Birth Control League, ABCL)을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녀의 운동을 비난하였고, 법적으로도 미풍양속을 어긴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가렛 생어의 활약으로 1930년대부터 산아 제한(birth control) 혹은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1960년에는 경구피임약이 발명되어 미국식품의약국(FDA) 판매 승인을 받아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피임약의 보급은 2

1) 서울대교구 사제,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종교사회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에 쓴 글이다.

차 세계 대전 이후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의 집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더구나 각국의 정부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산아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하였기에, 인공피임을 통한 출산조절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62년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쇄신'과 '대화' 등을 모토로 내세웠기 때문에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 교회도 경구피임약과 같은 인공 피임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신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퍼져있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도 산아 제한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반 해도 모든 그리스도교가 인공 피임을 반대했었다. 그러다 1930년 성공회는 램베스 회의(Lambeth Conference)에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 안에서 인공 피임을 허용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어서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도 피임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교황 비오11세는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관하여'라고도 부르는 회칙 「정결한 혼인(Casti Connubii)」을 발표하여 인공 피임은 본질적으로 그르다는 교회의 전통을 확인하였다.

또한 1930년 일본의 큐사쿠 오지노와 오스트리아의 헤르만 크나우스가 여성의 주기 안에 임신이 되지 않는 '안전한 기간(safe period)'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주기 중 배란이 되는 기간에만 성관계를 절제함으로써 임신을 피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이를 리듬법(rhythm method)이라고 하는데 가톨릭교회는 논란 끝에 1951년 비오 12세가 '이탈리아 가톨릭 산파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심각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가 리듬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며 혼인의 온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허용하였다.

1960년대 초 다시 피임 허용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교황 요한 23세는 산아제한 문제를 공의회 대신에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하고, 1963년 3월 의사, 인구학자, 사회학자 등 평신도 4명과 성직자 2명으로 구성된 <인구, 가정, 출산에 관한 연구를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3개월 후 요한 23세가 선종하였고 바오로 6세가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였는데, 1963년 10월부터 1966년 6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점점 위원 수가 증가하여, 마지막 회의까지 총 55명(또는 57명)이 참여하였다.

1966년 6월 28일 위원회는 바오로 6세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는데, 51명(또는 53명)은 인공 피임을 허락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따로 전달된 4명의 소수 의견은 피임 허용은 하느님의 법을 바꾸는 것으로 교회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영국의 <타블렛>과 미국의 <더내쇼날리포터>등 교회 언론에 알려지면서 교회 안팎으로 피임 허용에 대한 기대가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바오로 6세는 2년 동안 숙고하면서 결정을 미루다 마침내 1968년 7월 교회의 전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어떤 종류의 인공 피임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인간 생명」을 발표하였다.

성 해방, 여성 해방 등의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이미 가톨릭신자들의 삶에 인공피임이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연법을 준수하고 인간 생명 전달에 있어서 창조주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은 인공 피임을 거부하고 자연출산조절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회칙 「인간 생명」은 발표 직후 심각한 후폭풍을 맞아야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앤드류 그릴리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가임기 가톨릭 여성의 4분의 3이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가톨릭 신자의 80%가 인공피임을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회칙의 발표로 많은 이들이 가톨릭교회를 떠났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당시 미국 가톨릭대학 윤리신학 교수였던 찰스 쿠란 신부는 「인간 생명」에 대한 공개적인 반론을 제기하며 피임과 같은 사적인 부분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가톨릭 신학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였기에 바오로 6세는 회칙 반포 일주일 후인 1968년 7월 31일 카스텔 간돌포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당신의 고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이 회칙과 회칙을 준비하는 동안에 느꼈던 나의 심정을 꾸밈없이 밝히려 합니다. 첫째로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연구하여 이 회칙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하였던 지난 4년 동안 내게는 이 무거운 책임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런 책임감이 내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 나는 교회와 전 인류에게 해답을 주어야 하였고, 내게 맡겨진 사도적 사명의 의무와 자유를 고려하여 교회의 오랜 전통, 즉 최근의 세 분 전임 교황들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하였습니다. (...)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열광적으로 전개하는 치열한 토론도 알고 있었고, 대중과 출판물들의 요란스러운 여론도 들었으며, 아버지요 목자인 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존경할 만한 부녀들의 어려운 환경과 심각한 체험들도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연구와 위정자들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세계 인구 문제에 관한 학적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 이렇게 산더미같이 모여든 논증 앞에서 나는 몇 번이나 당황하였으며, 인간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정하고 선포해야 할 끔찍한 사도적 사명에 스스로의 부당함을 몇 번이나 다시 느꼈습니다. 시대적 여론에 동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사회가 어렵게 받아들일 나의 의견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 멋대로 부부생활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몇 번이나 주저하였습니다.”

이런 오랜 고뇌와 주저 속에서도 결국 바오로 6세는 “진실한 인간적 사랑의 내적 요구와 혼인 제도의 본질적 구조와 부부의 인간 품위와 생명에 대한 부부의 봉사 사명과 그리스도 신자 부부의 성스러움에서 유래하는 신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 생명」이 강조한 '빌링스법(Billings Ovulation Method)'과 같은 자연출산조절법이 개발되고, 「인간 생명」에서 경고한 인공 피임의 폐해가 현실화 되면서 바오로 6세의 결정이 예언자적인 안목이었음을 인정하고 「인간 생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칙의 구성과 요지

이 회칙의 제목 아래에는 "올바른 산아 조절에 관하여" 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수신자라는 회칙이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서론(1항), I 장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2-6항), II 장 "교리상의 원칙" (7-18항), III 장 "사목지침"(19-31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항마다 소제목이 달려있다. 서론과 I 장에서 바오로 6세는 부부관계와 인간 생명의 전달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명시하면서 교회의 교도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윤리원칙을 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된 '연구위원회'가 제시한 결론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혼인의 도덕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황 스스로가 마음을 다하여 검토한 후 이제 답을 주려고 한다고 밝힌다.

II 장에서는 부부 사랑의 본질과 특성, 부모의 책임을 설명한다. 특히 부부 행위는 부부의 일치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부부 행위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11항)하며, 이는 시초에 인간 생명을 위해 "하느님께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12항)고 밝힌다. 이어서 단종, 낙태, 피임은 산아 조절의 그릇된 방법이라는 것과, 병의 치료의 결과로 인한 출산 장애는 타당하며, 출산 조절을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부의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 "임신기에는 부부 행위를 절제하고" "불임기에만 부부 행위를" 하는 "주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므로 괜찮다고 가르친다(16항). 또한 교황은 인공적 산아 제한이 가져올 심각한 피해들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반대를 받는다고 해도 자연법과 복음의 법을 "겸손되이 또 강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18항).

III 장에서는 산아조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생명과 가정에 관한 참된 가치 존중, 부부 사이의 절제, 정결에 유리한 사회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 학자, 그리스도 신자 부부, 의사와 의료인, 사제, 주교 등 각자에게 필요한 지침과 호소를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자연법을 준수하자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회칙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

이 글에서 다루는 「인간 생명」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은 미국의 윤리신학자 재닛 스미스(1950-) 교수의 저서 『Humanae Vitae: A Generation Later』의 내용에서 주로 발췌하였다. 스미스 교수는 오랫동안 회칙 「인간 생명」과 '피임'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해왔으며, 미국 달라스 대학의 철학교수를 거쳐 현재 디트로이트에 있는 성심 대신학교의 윤리신학 교수이자 교황청 가정평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서론: 생명의 전달(The Transmission of Life)

1항은 "인간 생명(Humanae Vitae)을 전달할 중대한 임무(munus, mission)는 부부를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자유롭고 의식적인 협조자로 들어 높이는 것이므로, 때로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걱정이 따르기는 하지만, 부부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교회 문헌의 제목은 보통 첫 두 단어로 정해진다. 따라서 이 문장의 첫 두 단어인 "인간 생명"이 회칙의 제목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임무'로 번역된 라틴어 munus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생활에서 왜 '피임'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잘못인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단어는 '의무(duty)'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의무'로는 munus가 지닌 충분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며, 임무나 사명(mission) 또는 소명(vocation)이 더 적절한 단어이다. 의무(duty)는 때로는 억지로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라틴어 munus는 부정적인 뜻이 전혀 없으며, 사명을 부여받는 사람에게 영광스럽고, 기꺼이 수용할 소명과 같은 것이다. 성경에서 제자, 예언자, 사도로 불리는 임무도 munus로 표현되며, 사제직, 예언직, 봉사직(왕직)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도 munus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교회의 수위권을 주신 것도 munus이며, 주교나 교황의 직무도 munus이다. 「교회 헌장」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 할 munus를 받았고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표현한다. 즉 Munus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인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은 47-51항에 걸쳐서 부부의 사랑과 생명 전달에 대한 munus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문헌은 부부가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일은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고유한 사명"(50항)이며 이 "생명 전달의 임무는 현세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인간의 영원한 목적과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한다"(51항)고 선언한다. 생명을 전달하는 임무를 통해 부부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완덕과 구원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부부의 사랑이 본성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열매 맺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 생명」 9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녀들은 부부의 선에 크게 기여하며 부부들이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변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권고 「가정공동체」에서 크리스찬 부부는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제직, 예언직, 봉사직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munus)를 실천해야 하며, 특히 자녀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예언직이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가정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50항).

따라서 만약 부부가 피임을 통해 생명 전달의 임무를 포기한다면 단지 생식 능력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과 가정과 자녀를 통해 부부에게 주시는 하느님

의 선물과 축복, 구원 계획마저도 거부하는 셈이 된다. 1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의 "어려움과 걱정"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부부가 육아 부담 없이 둘만의 삶을 즐기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피임을 통해 생명의 전달을 포기하거나 자녀 출산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자연법을 어기는 일일 뿐 아니라 근원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이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선물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항은 이어서 이 임무 수행이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켰고 "이 문제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에 직접 관계되는 일들이므로 교회가 무관심 할 수 없다"고 밝힌다. 종종 교회가 왜 성(sexuality) 문제에 집착하느냐는 비판을 받지만 교회는 인간의 행복과 구원은 개인이 자신의 성(sexuality)을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통합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성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상호 관계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은 한 인간이 자신을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건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성을 포함하여 타인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이다. 건강하지 못한 성은 성폭력, 무책임한 성적 방종, 미혼 임신과 낙태, 이혼 등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 특히 성은 생식 능력과 인간 생명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 생명의 원천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2.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

「인간 생명」은 2항에서 6항까지 제1부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이라는 소제목으로 본론을 시작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2항에서 인구 조절을 요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들을 일부 소개한다.

첫째, 재화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자녀가 많은 가정과 개발도상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1960년대에 세계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신봉하는 단체들의 영향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이미 산아제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우려하여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조건으로 산아제한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올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3세계의 빈곤과 기아는 불의한 구조로 말미암은 재화의 공정한 분배의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다.

둘째로 교황은 "인간사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 혼인에서 부부 사랑의 가치, 이 부부 사랑에 관련된 부부 행위(sexual intercourse) 등에 대한 견해"가 변화되었음을 지적한다.

1960년대는 페미니즘 또는 여성주의 운동이 확대되는 시기였고, 여성이 가정을 떠나 임금 노동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출산을 통제하고픈 욕구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더구나 경구피임약 등 피임법 사용이 확산되면서 부부 행위는 출산이 목적이 아니라 부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셋째로 교황은 "사람이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를 "생명 전달을 규제하는 법칙"에 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즉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인간이 하느님이 주신 지성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면 약과 기구를 통해 자신의 출산력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항변이 있다는 것이다.

3항에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임을 금지해 온 교회의 가르침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언급된다.

첫째, "현재의 생활 조건으로 보거나 부부의 화목과 신의를 보전하기 위한 부부 관계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부부에게 절제라는 큰 희생을 요구하는 "현재의 도덕률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로, 피임 찬성론자들은 전체를 보존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전체의 부분적인 선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소위 "전체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Totality)"를 내세워 피임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전체성의 원리는 의학윤리에서 환자의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희생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이론이다. 마찬가지로 피임 찬성론자들은 "부부 생활의 전체에 걸쳐서" "자녀 출산의 목적성"이 지켜질 수 있다면, 임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인 부부행위에서" 자녀 출산의 목적성을 희생시키는 피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미스 교수는 전체성의 원리를 부부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부 행위가 부부 생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논리일 뿐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혼인은 단순히 부부행위나 다른 요소들의 종합이 아닌 전혀 다른 본성의 실재라는 것이다. 비오 12세도 '물리적 기관 (physical organisms)'과 '도덕적 기관(moral organisms)'을 구별하면서, 물리적 기관은 분명히 전체에 대해 부분이 종속될 수 있지만, 도덕적 기관에서는 각각의 부분이 전체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도덕적 기관에서는 전체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를테면 국가 혹은 공동선이라는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제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억울하게 제거된다면 전체 사회는 유지되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의 정의와 공동선은 훼손된다. 부부 사이의 개별적인 성관계도 각각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전체의 일부가 아니다. 마치 부부 생활이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면, 가끔씩 외도를 해도 좋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황은 이 '전체성의 원리' 에 따른 피임 허용 주장에 대한 세밀한 논증은 하지 않지만,

14항에서 이 주장에 대해 단죄하며, "본질적으로 윤리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답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간 사회의 선을 옹호하고 촉진할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지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4항에서 교황은 교회의 교도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 "혼인에 대한 윤리 원칙을 새롭게 더욱 깊이 연구"하였고, 그 바탕은 하느님의 뜻을 밝혀주는 자연법이며, 사람들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5항과 6항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은 선임교황인 요한 23세가 1963년 설립하신 피임에 관한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보고서의 의견들이 통일되지 않았고 혼인에 관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이어서 "오랫동안 하느님께 기도한 뒤에,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따라 이제 이 어려운 문제에 대답"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교리상의 원칙

7항부터 18항까지는 2부 '교리상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부부 사랑과 부모의 책임, 부부 행위의 본질과 목적 등을 다루고 있다. 7항에서 교황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 피임에 대해 "부부 사랑"과 "책임 있는 부모됨의 요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두 가지 요소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 부부 사랑(Conjugal Love)의 정의와 특성

8항은 우선 부부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참 본질과 참 품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부부 사랑의 원천이 하느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즉시 '부모됨'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에페소 3,15)'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부 사랑의 두 요소인 일치와 생명 출산이 불가분의 요소로서 들어있음을 암시되어 있다.

이어서 회칙은 "혼인은 우연이나 자연력의 맹목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계획을 인간들 사이에서 실현시키고자" 제정하신 것이며, 부부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완성시키는 인격적 교류를 이루며,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교육을 위하여 하느님과 협조하는 것," 즉 사랑의 일치와 출산이 혼인의 본질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세례 받은 자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표시하는 성사임을 지적한다.

부부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부부가 이런 "인격적 교류"인 사랑을 통해 사랑의 능력을 키우고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숙함을 의미한다.

9항은 8항에 비추어 부부 사랑의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부부 사랑은 완전히 인간적(human) 사랑이다." 그것은 동물처럼 본능이나 충동이 아니라 "자유의지(free will)의 행위"이며 부부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같이 되어 인간적 완성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둘째, "전체적인(total) 사랑"이다. 부부는 어떤 부당한 제한 없이 또 "자기만의 편리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는 특별한 형태의 인격적인 우정이다. 부부는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자신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한다."

셋째, "죽기까지 충실하고(faithful) 독점적(exclusive)"인 사랑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혼인의 유대를 맺으며 이 유대는 평생 동안 좋을 때든 나쁜 때든 풀릴 수 없다. 비록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세기를 통해 많은 부부가 보여준 모범은 이런 신의는 혼인의 본질에 따르는 것이며 거기서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넷째, "이 사랑은 결실 풍부한 것(fruitful)이다." 부부의 사랑은 흘러 넘쳐 "새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창조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사목헌장」 50항이 지적한대로 "혼인과 부부 사랑은 그 본질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자녀들은 참으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은 부모들을 신적 신비를 체험하게 하고 완성으로 이끌어 주는 선물이다.

2) 책임 있는 부모됨 (Responsible Parenthood)

많은 이들이 피임을 정당화하는데 "책임 있는 부모됨"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10항에서 교황은 이 용어의 참된 의미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생물학적으로 생식력을 통해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은 부부 행위가 자녀 출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성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과 존중이 없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째, 책임 있는 부모됨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로 "본능과 감정의 충동"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인격체로서 영혼의 능력인 지성과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함으로써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감정과 충동을 절제함으로써 인내하고 사랑 가득한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부모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자녀의 수를 결정할 책임이다. 책임감 있는 부모됨

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뒤에 "더 많은 자녀를 두기로 결정하든지, 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윤리 원칙을 지키면서 일정한 기간이나 불확정 기간 동안 다른 자녀들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무조건 생기는 대로 자녀를 낳도록 가르친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이다.

교황은 그러나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독자적으로"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 창조 계획에 순응"하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객관적 윤리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질서의 믿을 만한 해석자는 각자의 올바른 양심"이며 "부모의 책임 수행은 올바른 가치 질서 안에서 하느님과 자신들과 가족들과 인간 사회에 대한 부부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단지 자신이 좀 더 편하기 위해, 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인들은 부부행위와 가족계획에 있어서 "현실적" 이유보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순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질서가 아닐까?

3. 교리상의 원칙

11항부터 13항까지는 이 회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황은 부부 행위 안에는 부부의 일치와 출산이라는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특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피임은 부부 행위의 본성과 목적을 훼손한다고 설명한다.

3) 부부 행위(Conjugal Act)의 본성과 목적의 존엄성

11항은 우선 "부부가 밀접히 정결하게 결합되어 인간 생명이 전달되는 부부 행위는 공의회에서 말한 대로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과거 교회 안에 있었던 부부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배제한다. 초대 교회의 여러 교부들 중에는 부부 행위를 출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필요악으로 여기거나, 동정 생활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묘사한 이들이 있었다. 공의회에서 말했다는 것은 「사목헌장」 49항의 내용이다.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서로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이며, "참으로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는 상호 증여를 뜻하고 복돋우며,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풍요롭게 한다"라며 혼인의 긍정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11항은 부부 행위의 목적이 부부를 결합시키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임을 묘사하면서 12항에서 이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11항은 "임신이 안 될 것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결합을 표시하고 견고하게 하는 목적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정당"하다고 말한다. 또 하느님께서 지혜롭게 마련하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부부 행위가 이루어질 때 마다 항상 새 생명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는 자연법을 해석하며 변함없이 자연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어떠한 부부 행위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대목은 이 회칙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일부 학

자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부부 행위에는 자연이 심어놓은 새 생명 탄생의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자연의 힘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방해가 없다면 새 생명이 전달되고 시작될 수 있는데 피임을 시도하는 이들은 이 생명을 원하지 않는 반생명적 의지와 행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지와 행동은 피임이 실패하여 태어나게 되는 새 생명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인데, 그 아기들이 원하지 않는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피임의 종류와 문제점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4항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4) 불가분의 관계인 일치(Union)와 출산(Procreation)

부부 행위에서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선언한 12항은 교회의 혼인에 관한 교리의 핵심이면서도 또한 논란이 된 내용이기도 하다. 교황은 "이 두 가지 의의는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라고 단호히 선언한다. 즉 부부 행위에서의 일치와 출산의 결합은 하느님이 정하신 자연법이며 내적 진리이므로 인간이 함부로 부부 행위에서 출산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2항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이같이 밀접한 관계 때문에 부부 행위는 남편과 아내를 굳은 인연으로 결합시키는 동시에 부부에게 다 같이 본질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일치와 출산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을 준수한다면 부부 행위는 전적으로 참된 부부 사랑의 의의와, 인간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사명인 어버이로서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즉 교황은 부부는 성적 행위의 참된 의미, 온전한 사랑을 통한 일치와 그 결과로 새 생명을 전달하게 되는 그 내재적 본성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1930년에 나온 비오 11세의 회칙 「정결한 혼인(Casti Connubii)」의 내용과도 상통한다. 비오 11세 교황은 피임과 같이 자녀 출산과 관련된 모든 죄는 어떤 면에서 부부의 신뢰를 거스르는 죄도 되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축복들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부부 행위에서의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피임은 결국 부부 행위의 '출산'의 의미 뿐 아니라 '일치'의 의미까지도 훼손한다는 것이며, 이 논증은 이후 피임을 반대하는 우선적인 논증 중 하나가 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인간 생명」에 대한 해설에서 부부 행위는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며 평생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전하는 "진실을 말하는 몸의 언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부부 행위에서 생명 전달을 막는 것은 몸의 언어로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언한다. 왜냐하면 피임을 통해 자신의 "생식력"을 배제하는 것은 성을 만든 하느님의 의도를 마음대로 바꾸어 성의 의미를 조작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며, 부부가 온전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부 행위에서의 피임은 생명에 대해 열려있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생식력"을 포함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모두 내어놓도록 요청되는 부부 사랑의 내적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 측면 뿐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성이 지니고 있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측면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임은 새 생명의 탄생을 통해 둘이 가장 극명하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빼앗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에 열려있지 않은 성적 결합의 행동은 진정으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출산의 가능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성적 행위를 하는 부부가 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평생에 걸친 헌신을 갖추기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녀를 함께 갖고 키우고자 하는 원의를 지니는 부부는 평생 서로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원의도 함께 지니게 된다.

또한 성 행위는 분명히 쾌락을 나누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 행위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도 행해질 수 있고 이런 경우 당연히 피임이 행해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성 행위는 서로 지속적인 일치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덧없는 쾌락을 추구한다. 독점적이고 평생 헌신하고자하는 부부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게 되는 성 행위는 그러한 행위로는 제대로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성적 결합이 가장 깊이가 있고 적절한 형태로 그 행위의 의도와 열망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갖게 된 부부는 부부에게 적합한 종류의 실제적인 결합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부가 열망한 결합의 육화된 현시(incarnational manifestation)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부의 삶에서 나온 살이요, 그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들로부터 나누어서 얻어진 유전자로 구성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평생 자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한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부간에 더 많은 유대를 만들어낼 가능성과, 서로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키워 줄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성적 결합에서 피임을 통해 출산의 의미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함께 가지는 선익과 함께 더불어 따라오게 되는 모든 선익에 대한 열망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논증이 피임을 하는 커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유대를 원하지 않거나, 서로 부모가 되려는 열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임을 하는 커플들은 그런 열망을 적절하게 표현하려고 의도한 행위에 참여하지만 그런 열망을 적절히 표현하도록 만드는 힘을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다. 피임하지 않은 커플들의 성적 행위는 그들의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본성적으로 이들 행동이 지닌 의미를 모두 수행한다. 아무리 많은 양의 감정이나 느낌도 피임하지 않는 커플들이 성 행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부부에게 산아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모든 부부 행위가 생명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자연이 부여한 생명 전달의 성적 본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의도이지 산아 조절을 반대하거나 이미 자녀를 낳은 부부가 계속해서 부부 행위마다 출산을 의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14항과 16항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

이다.

5)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13항은 11항과 12항의 부연 설명이다. 부부 행위를 통한 부부 일치와 생명 전달은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선 "배우자의 조건이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강요된) 부부행위는 참된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없"고 "바른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부부 행위에서 생명 전달의 의의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교황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특별법으로 부여하신 생명 전달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부 사랑의 행동은 혼인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계획에도 위배되고, 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부부 행위에 있어서 "하느님의 선물을 사용하면서" "그 선물의 의의와 목적을 파괴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본성에 위배되고 부부의 밀접한 관계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느님의 계획과 그 거룩한 뜻에 항거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한 무한정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생식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생식 기능은 본질적으로 인간 생명의 출산이 목적이며 인간 생명의 원천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정한 부부의 일치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부부 행위로는 당연히 얻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치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부부 행위는 배우자를 배려하며 자유롭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부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잉태할 목적이라고 해도 부당하다. 또한 시험관 아기에 의존하는 것도 부부 행위의 "일치의 의의"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러한 행동으로 설사 자녀가 얻어졌다 해도 "출산"의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출산"은 자유롭게 사랑 충만한 두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강요된 행위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 실험실의 기술자가 행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요약하자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므로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하느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주이시므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거스르는 행위도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동도 된다는 것이다.

13항은 요한 23세 교황의 권고 「어머니요 스승」 194항에 나오는 부분을 마지막에 덧붙인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신성시해야 한다. 생명은 그 형성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기에 동식물의 재생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 인간 생명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권고이다. 인간은 어떤 실험의 대상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이므로 동물과는 전혀 다

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이라는 현실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피임 보급 등 반생명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3. 교리상의 원칙

6) 산아조절의 그릇된 방법과 치료를 위한 간접적 단종 허용

14항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앞에서 논의한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이론의 기초적 원칙에 의거하여” 이미 시작된 임신의 과정을 직접 중단하는 행위를 출산 조절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직접적 낙태”는 “치유의 이유라 할지라도 배격”하며, “남자이건 여자이건, 영구적이건 일시적이건 직접 단종(斷種)하는 것”과 부부 행위의 전후 등 어떤 단계에서든지 사용되는 인위적인 “피임”을 단죄한다.

우선, 교황은 낙태와 관련하여 각주에서 <로마 교리서>, 회칙 「정결한 혼인」, 비오 12세가 1951년 10월 29일 이탈리아 가톨릭 산과 의사 협회에 한 훈화, 1963년 발표한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 「사목헌장」 등 여러 교회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로마 교리서> 2부 8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자녀를 갖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혼인을 제정하신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혼인에서 인위적으로 임신을 방해하거나, 낙태를 행하는 사람은 가장 심각한 죄, 즉 사전 모의된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1930년 비오 11세의 회칙 「정결한 혼인」 32항은 합법적인 치료를 위한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 할지라도 낙태는 무죄한 아기를 직접 죽이는 행위로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에 거르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신성하므로,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파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비오 12세는 1951년 ‘가톨릭 산과 의사 협회’ 훈화에서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를 길게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모든 인간은, 태중의 아기조차도, 부모나 어떤 인간 사회 혹은 권위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생명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 몇 년 전 많은 경우에 일어났던 태어나거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무가치한 생명’이라고 부르며 직접 죽이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비록 공권력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해도, 무죄하지만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국가에 불필요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짐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긍정적 자연적 그리고 신적인 권리에 상반되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교황은 단종(sterilization)을 단죄하는 이유를 본문에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 각주에 관련 문헌들, 즉 「정결한 혼인」, 검사성성 교령, 비오 12세의 훈화 등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단종을 단죄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피임에 대한 단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단종은 일종의 ‘신체손상(mutilation)’으로서 그 자체로 선(good)인 인체의 온전한 모습, 즉 생식력(fertility)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종의 행위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익을 자신에게서 고의적으로 제거해버리는 행위이다. 그런데 많은 형태의 피임 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군가의 출산 능력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일시적인 단종”을 야기하고 인체의 본래 모습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정결한 혼인」 22항에서 비오 11세는 다음과 같이 단종을 단죄한다. “게다가, 그리스도교 교리는, 인간의 이성의 빛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개인들은 자신의 몸의 일부분에 대해 그것의 자연적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것을 확고히 가르친다. 개인들은 그것들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들의 자연적인 기능들에 맞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들거나 할 자유는 없다. 다만 몸 전체의 선익을 위한 다른 방안이 아무 것도 마련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즉 몸 전체의 선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기능들은 함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 어떤 기관을 제거한 결과로 발생하는 단종의 경우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지만(간접적 단종), 임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단종(직접적 단종)은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비오 12세가 1958년 ‘국제 혈액 협회 제7차 회의에서 한 훈화’에서도 교황은 직접적 단종을 단죄하지만 간접적 단종을 허용한다. “직접적 단종(direct sterilization)이란 말은 그것이 의도된 바가 수단이든 목적이든 생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용어를 생식을 불가능하게 이끄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비록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해도, 발생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난소 제거가 필연적인 결과로 생식의 불가능성을 야기하지만, 그것이 목적 혹은 수단으로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어서 세 번째로 부부 행위의 순간과 전후에 걸쳐 모든 피임 행위를 단죄한다. 우리말 번역본은 “또한 부부 행위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피임을 목적하거나 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필연적인 결과로서...”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스미스 교수의 영문 번역본과 바티칸 사이트에 있는 영문 번역본을 찾아보았다.

Similarly there must be a rejection of all acts that attempt to impede procreation, both those chosen as means to an end, and those chosen as ends. This includes acts that precede intercourse, acts that accompany ends, and acts that are directed to the natural consequences of intercourse. (스미스 교수)

Similarly excluded is any action which either before, at the moment of, or after sexual intercourse, is specifically intended to prevent procreation—

whether as an end or as a means. (바티칸)

영문 번역본을 살펴보면 한국어판의 ‘부부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로서...’라는 번역은 부부행위의 필연적 혹은 자연적인 결과인 사정된 정자를 부부 행위 후에 제거하려는 행위, 혹은 부부 행위 후에 이루어지는 수정과 착상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행위 (엄격히 말하면 낙태)를 의도한 구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셋째 단락은 앞 단락에서 말한 ‘일시적인 단종’을 상세하게 표현한 것인데, 단순히 부부 행위를 하는 동안 임신을 방해하는 ‘콘돔’과 같은 형태의 피임 방법들만을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부 행위 이전에 먹는 ‘경구 피임약’과 부부 행위 후의 ‘질 세척’이나 ‘사후 피임약 복용’ 등 모든 행위가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그 행위들이 일종의 ‘단종’, 즉 ‘일시적인 단종’이며 따라서 단종에 대한 도덕적 단죄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락에 대한 각주 역시 <로마 교리서>, 「정결한 혼인」, 비오 12세의 훈화들, 요한 23세의 「어머니요 스승」 등의 문헌이 제시되어 있다. 요한 23세는 「어머니요 스승」에서 동식물에 적합한 생식력 조절의 방법들이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로로 6세 교황은 또한 “고의로 피임하는 부부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덜 크다고 생각되는 악을 택해야 한다면, 부부 행위는 피임할 때의 행위도 그 전후에 임신할 때의 행위와 함께 하나의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행위가 같은 하나의 윤리적 선에 참여한다는 따위의 이유를 끌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덜 크다고 생각되는 악을 참아내는 원리”란 때때로 더 큰 악을 피하고 어떤 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덜 큰 악을 묵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원리는 보통 혼인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피임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부부 행위를 망치거나 또 다시 임신하여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 이혼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위협은 피임보다 더 큰 악으로 간주되므로 피임은 덜 크다고 생각되는 악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회칙 「인간 생명」은 각주에서 비오 12세 교황이 1953년 가톨릭 법조인회 제5차 회의에서 한 훈화를 제시한다. 비오 12세는 “현실은 오류와 죄가 세상에 아주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것들을 꾸짖으시지만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오류는 가능한 한 항상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한 묵인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며,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비오 교황은 마태오 13,24-30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지적하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오류를 억제할 의무가 궁극적인 행동 규범이 될 수는 없고, 어떤 상황에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오류를 참아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선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악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악을 참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임을 사용하려는 직접적인 선택이 비오 12세가 말한 악을 “묵인하는 것 (tolerating)”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 생명」에서 바오로 6세는 계속해서 “물론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나 탁월한 선을 추구하고자 덜 큰 악을 묵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악을 행함으로써 선을 결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곧, 본질적으로 윤리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답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간 사회의 선을 옹호하고 촉진할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지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선언한다. 이 대목에 해당하는 각주는 로마서 3.8을 제시한다. 사도 바오로는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개념을 조롱한다.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덜 큰 악에 대한 묵인의 원리’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intrinsically immoral)’ 행위를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이 원리는 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을 행하지만 나쁜 결과들을 가져 오게 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악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더 합당한 원리(이중 결과의 원리)이다. 고전적 윤리신학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으며,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또한 피임을 정당화하려는 논증 중 또 하나인 “부부 행위는 피임할 때의 행위도 그 전후에 임신할 때의 행위와 함께 하나의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행위가 같은 하나의 윤리적 선에 참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의로 임신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내적으로 이미 악하게 된 부부 행위도 임신할 수 있는 부부 생활 전체와 함께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그릇된 생각”이라는 답을 준다. 이는 전체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Totality)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3항에 대한 해설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15항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출산 장애를 직접 목적인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방법의 경우 도덕적으로 출산 장애가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런 경우가 바로 ‘묵인할 수 있는 악’에 해당되는데 ‘전체성의 원리’와 ‘이중 결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7) 주기법(週期法) 이용의 타당성

16항은 3항에서 현대인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제기한 문제들 중 두 가지 오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다. 첫째, “비이성적 자연이 부여한 힘을 조정하여 인간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지배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권리이며 사명”이라는 주장과, 둘째, “산아를 인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화목에 이바지하고, 이미 출생한 자녀들 교육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진대, 현대 환경을 보아 산아 제한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주장이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이성을 갖춘 인간이 창조주와 긴밀히 협력하는 일에서 인간 이성의 작용을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찬양하고 권장”하지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물의 질서를 지킨다는 조건 아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즉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부부행위의 본성과 목적에 관한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회칙의 주요 내용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그런 조건 하에서만 인간의 이성이 작용이 의미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이어서 교황은 구체적으로 자연법을 준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이유이건, 또는 외적 환경의 이유이건, 다음 출산과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부는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에만 부부 행위를 함으로써 방금 설명한 도덕률을 거스르는 일 없이 산아를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바이다.”

이미 14항에서 직접적 낙태와 단종 등 부부행위에서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자연적인 결과로서 피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교회는 단죄한다고 밝혔다. 또 12항에서는 부부행위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새 생명을 낳도록 섭리되어 있으며 부부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일치와 출산의 목적은 하느님께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파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은 16항에서 “임신을 직접 방해하는 방법의 사용” 즉 인공 피임은 “언제나 부당하다고 배척하면서” 그러나 부부가 정당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여성의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 가임기에는 부부 행위를 절제하고 불임기에만 부부행위를 함으로써 산아 조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서 허락한다. 교회는 이 방법들을 자연주기법(Natural Family Planning, NFP)이라고 부른다.

교황은 인공 피임과 자연주기법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한다. 자연주기법의 경우는 불임기라는, “부부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정당하고 사용하는 것”이지만, 인공피임의 경우는 “부부가 출산의 자연 질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은 같고, 자연주기법 조차도 몸의 온도나 도표를 관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인공 피임에서 피임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연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연적’과 ‘비자연적’이라는 용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말하는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 혹은 본성(nature)에 부합하여 작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인공 피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서 주장하는 ‘자연적’이라는 용어는 ‘보통의(normal)’ 또는 어떤 계획 없이 ‘충동적(spontaneous)’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통의’ 여성들은 주기표를 만들지 않고, ‘충동적’으로 부부 행위를 갖는데 반해, NFP를 사용하는 부부는 ‘충동적으로’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후자의 의미에서 인공피임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NFP가 ‘자연적’이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교회가 말하는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자연 질서, 또는 본성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약이나 기구가 사용될 때, 그 사람의 자연적(본성적)인 조건을 회복하는데 사용된다면 것은 그 약이나 기구가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니실린’을 사용하거나 ‘안경’을 쓰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본성에 부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자연적’이다. 단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피임이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건강과 출산력이라는 ‘자연적(본성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불임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인공피임을 사용하는 커플은 단순히 아기를 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성행위를 하면서도 생명 전달이라는 성행위의 자연적(본성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반면에 NFP를 사용하는 커플은 아기를 가지 않을 의도를 역시 갖고 있더라도, 성행위가 갖고 있는 출산의 자연 질서 과정을 훼손하지 않는다. 즉 그 때 여성이 가임 상태이든 불임 상태이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다. NFP는 여성의 자연적인 가임 주기를 존중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자연적’이다.

16항에서 교황도 이 두 가지 방법이 “부부가 임신을 피하자는 데에 확실히 동의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부연한다. 자연주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만 “부부가 정당한 이유로 자녀의 출생을 바랄 수 없을 때마다 임신기에 부부 행위를 절제”하고, 불임기에 부부 행위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증언한다. 부부가 인위적으로 생식력을 훼손하는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부부가 어떤 경우에 성행위를 나누고, 언제 절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혀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

NFP와 인공 피임의 차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NFP를 실천하는 이들은 부부가 함께 절제라는 짐과 책임을 나누어 짊어지는데 인공 피임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 여성들에게만 건강상의 위험과 불편함 등의 짐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인공 피임 행위가 화학 약품이나 기구를 적용하는 생리학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라면, 절제를 통한 자연주기법은 생명에 대한 책임과 선택, 그리고 혼인에 대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부부간의 협력을 통한 전인적인 차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공 피임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생식력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통제를 포기하려하지 않기에 낙태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NFP를 사용하는 이들은 자신들은 하느님과 협력하고 있고, 그 협력을 지속하려고 하기에 낙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NFP를 사용하는 이들은 보통 더 많은 자녀를 갖고 있으며 결혼과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원하게 된다.

또한 NFP를 사용하는 부부는 흔히 반대자가 주장하는 것 같은 ‘자기 부정(self-denial)’ 혹은 절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전한다. 물론 결혼 생활에서 절제하는 것이 어렵게 여기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부행위 외에 사랑을 표현하고 부부간에 소통하는 더 훌륭한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자기 절제’와 성적 욕구의 조절의 태도가 배우자에 대한 존경의 태도의 결과이면서, 나아가 삶 전체에 스며들

어 가정 밖에서도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준다고 지적한다.

8) 산아조절의 인공적 방법의 증대한 결과

17항은 인공피임의 폐해에 대한 바오로 6세 교황의 예측을 담고 있으며, 16항에서 제기한 둘째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인공피임 찬성론자들은 인공적인 산아제한이 가정에 평화와 화목을 가져오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황은 오히려 그 폐해가 클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예측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적중해 갔고, 그 심각성이 더 커져 가면서 당시 반대를 무릅쓰고 회칙을 발표한 것이 참된 예언적 행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첫째로 부부 관계의 훼손이다. 교황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행동으로써 얼마나 넓게 또 얼마나 쉽게 부부의 불신과 윤리 생활의 퇴폐의 길이 열리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황은 인공피임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정욕에 도구”로 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욱 통탄할 일은, 피임 방법 사용에 습관된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할 줄 모르며, 아내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시하고 아내를 자기 정욕에 봉사하는 도구로 삼아 버려, 아내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동료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낙태와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인공피임으로 남용으로 부부간의 일치와 출산이라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성을 무책임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젊은이들의 타락이다. 교황은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또 사람들이, 특히 정욕이 강한 젊은이들이 도덕률을 충실히 지키려면 얼마나 큰 자극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너무 쉬운 범법의 방법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려면 그리 오랜 경험이 필요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셋째는 국가의 의한 출산 통제이다.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가는 피임을 강요하게 된다. 교황은 부부가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피임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을 누가 책망할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법이 제시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가정이나 사회가 피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부부의 가장 고유한 사명의 심장부에게까지 국가 권력의 방자한 간섭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교황은 인간은 출산력과 관련하여 개인도 국가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육체 전체와 그 자연적 임무에 바쳐야 할 존경”과 “‘전체성의 원리’의 올바른 이해 때문”이라고 밝힌다. 3항에서 언급되었고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전체성의 원리’가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전체성의 원리’는 전체를 보존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전체의 부분적인 선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

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체성의 원리’를 사용하여 ‘전체’인 국가가 “부분”인 혼인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혼인의 행위가 국가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9) 참된 인간 가치의 보증인 교회

18항은 <제2장 교리상의 원칙>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비록 12장에서 교황은 “이런 교리가 얼마나 인간다운 것인지는 현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가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여론이 너무 많고 매우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 것처럼 회칙이 발표되었던 1968년에는 인공 피임이 이미 일반화되었고, 교회 내에서도 성직자들로부터도 인공피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황은 “교회가 그 하느님이신 창립자와 마찬가지로 ‘반대를 받는 표적’(루카 2,34)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밝힌다. 루카복음에서 시메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부모에게 한 이야기처럼 ‘진리’를 선포했던 예수는 자신이 가르친 진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 받는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황은 교회가 반대에 직면한다고 해서 “자연법과 복음법의 구별 없이 모든 법을 겸손되어 또 강하게 가르쳐야 할 맡은 바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두 가지 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이 법의 수호자이며 해석자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부당한 것을 절대로 타당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선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시므로 교회 역시 이 법에 구속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어서 교황은 “교회는 부부의 도덕률을 완전히 보존함으로써 인간 문화 재건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과학 기술의 남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부부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교회는 이런 도덕률 회복의 노력을 통해 “구세주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진실하고 관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4. 사목 지침

1) 어머니이며 스승인 교회

19항부터는 산아제한 문제와 관련된 각 주체들에게 전하는 사목 지침들이다. 교황은 우선 그가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법을 지키라고 호소하면서도, 국가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조절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어머니며 스승인 교회의 생각과 걱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교회는 구세주께서 하신 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교회도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군중을 붙잡고 여기며 죄인을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본모습을 회복한 인간 삶에 합당한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2) 신법 준수의 가능성

20항은 교회의 산아조절에 관한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키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고상하고 유익한 온갖 선”을 위해서는 굳은 결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착한 뜻을 비추어 주고 강하게 해주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을 때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또한 “이런 노력이 인간의 품위를 높여주고 인간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3) 자제(Self-Mastery or Self-Discipline)

21항은 자연주기법을 따르는 산아 조절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 요약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내용이 회칙 「인간 생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칙이 권유하는 정당한 산아조절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무엇보다 먼저 생명과 가정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부부 생활에서의 고유한 사랑을 올바른 질서에 따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자유의지의 힘으로 본능을 지배”하기 위한 자제(self-mastery)의 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일정한 기간 동안 절제”를 지키는 자연주기법을 사용하는 부부에게는 이 덕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자연주기법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절제가 부부의 사랑을 해친다고 주장하였지만 교황은 오히려 “부부의 정결을 빛내는” 이 덕목이 “부부의 사랑을 더욱 높은 인간적 가치로 충만하게 해 준다”고 강변한다. 물론 여기에는 “항구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덕분에 부부의 인격이 풍부히 발전하며 영적 가치로 풍부해”지고, “가정생활에 안정과 평화”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교황은 이 규율이 “배우자끼리의 배려와 존경”을 높이고, “이기주의를 몰아내며, 서로의 책임감을 깊게”해준다고 말한다. 이로써 부모는 자녀교육에도 깊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게 된다. 즉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인간의 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정신과 감각의 힘을 올바르게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 정결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22항에서 교황은 “인간 사회의 공동선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과 교육자들”

에게 이제 “정결을 닦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건전한 자유가 윤리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방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현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감각을 자극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과 외설 문학과 추한 영화 같은 것들을” 배격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런 퇴폐 현상을 예술이나 학문,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5) 국가 지도자들에게

23항부터 교황은 사회의 각 주체들에게 직접 말한다. 우선 “공동선 보호에 중한 책임”이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미풍양속(good morals)을 옹호하고 “가정 안에 자연법과 신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기를” 호소한다. 이는 국가 권력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아제한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교황은 “국가 권력은 다른 방법으로 인구 팽창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데, “곧 도덕률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정책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교황은 인구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요한 23세의 「어머니요 스승」을 인용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인간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수단” 즉 “인간과 인간 생명을 물질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인류가 “인간의 참된 가치를 존중하고 촉진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룬 자신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을 언급하며, “정책의 빈곤이나 사회 정의감의 결핍이나 재화의 개인 독점”과 같은 것에서 올 수 있는 불행의 책임을 하느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국가 지도자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기구 등 여러 나라가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6) 학자들에게

24항은 학자들에 대한 권고이다. 교황은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로써 인간의 정당한 출산 조절의 다양한 조건을 도와주고 더 완전히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사목 현장」 52항의 내용을 언급하며, 비오 12세의 바람대로 “의학(醫學)이 자연 주기를 살피서 정당한 산아 조절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사목현장」 51항에서 “생명 전달에 관한 하느님 법과 진정한 부부 사랑을 보장하는 하느님 법 사이에 실제로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가톨릭학자들이 이 사실의 증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

7) 그리스도 신자 부부들에게

25항은 혼인으로 불린 그리스도 신자 부부들이 신법과 자연법에 순응하도록 도와주는 성사를 통하여 은총의 삶을 누리도록 초대한다. 은총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창조주의

계획에 순응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는 멍에를 가볍게 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은 혼인 성사 때 견고해 져서 그리스도 신자 부부들은 “고유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 “이런 임무를 부부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법의 신성성과 감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물론 교황은 부부들이 혼인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유한하며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도록 당부한다. 부부는 신앙과 희망에서 힘을 얻고, 항구히 기도하여 은총과 자비를 청함으로써 “혼인 생활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황은 에페소서 5장의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인용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는 온전히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당부한다.

8) 가정 사도직

26항은 부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부부들이 자신의 혼인 소명에 충실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라고 권고한다. 교황은 부부가 “다른 부부를 위해서 사도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이 새로운 사도직은 “가장 현시대에 적합한”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말한다.

교황은 이와 관련된 각주에서 여러 공의회 문헌을 인용한다. 특히 교회헌장 35항은 혼인 생활은 예언자적 소임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소임이 있다고 말한다. 또 교회헌장 41항은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는 충실한 사랑으로 평생에 걸쳐 은총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하며, 자녀들을 그리스도 신앙과 복음적 덕행으로 훈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9) 의사들과 의료인들에게

27항에서 교황은 의사들과 의료인들 중 그리스도교적 사명이 요구하는 것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그들이 올바른 해결책을 발견하고 확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산아제한과 같은 분야에 지식을 쌓아서, 부부들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주고 정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직책상의 의무로 생각하기를 당부한다.

10) 사제들에게

28항과 29항은 사제들에 대한 권고이다. 특히 윤리 신학을 가르치는 사제들은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확실히 전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대해 내적, 외적으로 성실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논리적 이유보다 교부들이 진리를 밝힐 때 특별히 기쁘게 이끌어 주셨던 “성령의 빛 때문에 순종”하기를 당부한다. 이는 산아제한에 대한 논란에서 일부 신학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반발하기도 하고, 일부

성직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침묵했던 것을 엄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황은 “신앙 교리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도덕률에 관해서도, 교회의 교도권에 순종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29항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르침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말”고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며, “사제의 말과 사제의 가슴 속에서 우리 구세주의 사랑과 그 목소리의 영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제들은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굳은 신뢰로 말하고, 부부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주 영성체,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의 약점에 실망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한다.

11) 주교들에게

30항에서 교황은 주교들이 먼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혼인 생활을 안전하고 거룩하게 보호함으로써 혼인 생활이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충만함에 도달하도록 힘쓰라”고 요청하면서 이것이 “이 시대에서 주교들의 가장 긴급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인다. 그는 이런 혼인을 보호하는 임무는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 걸친 사목수행”과의 어떤 협력을 요구하는데, 이 모든 인간 활동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가정생활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 마지막 호소

교황은 31항에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런 노력이 참으로 중대하며,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모든 주교들과 함께 지켜오고 해석해 온 “확고한 교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며 “세계와 교회에 다 같이 유익한 것이라고 확신하는바”라고 밝힌다.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느님께서 자연에 박아 주신 법을 지혜롭게 사랑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대한 노력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부부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주님의 강복을 청하면서 회칙을 마무리 한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의 메시지는 44년이 지난 오늘 날에서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거나 약화된 이 시대에 인간 생명과 성의 존엄성, 객관적인 진리와 선, 그리고 자연법 등 그리스도교 가르침은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 그리고 개인의 편리와 쾌락의 추구라는 포스터모던 시대의 가치관에 밀려 더 이상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하느님 자리에 오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많은 현대인들은 인간 생명의 전달 임무와 관련된 규칙과 질서마저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느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여 버렸다. 그 결과는 바오로 6세가 예언한 대로 무분별한 성적 향락과 혼전 성관계, 이혼, 피임, 낙태, 미혼모, 정부의 산아조절 강요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행복이란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느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법을 사랑하고 준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바로 6세 교황의 마지막 권고를 깊이 새기면서, 「인간 생명」의 가르침을 다시 적극적으로 현대 사회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다.